

2022년도 1차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

당진시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당진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 1차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2년 3월
당진시장
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(지원목적) 경영환경 확보를 통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매출향상 기여

(지원규모) 50개 업체

(지원대상) 당진시내 사업장이 있고 공고일 기준 동일 업종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인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※ 사업자등록증 상 2021. 9. 11. 이후 창업기업은 신청 불가

☞ **소상공인 기준(상시근로자 수 기준)**

(광업.제조업.건설업 및 운수업)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

(도소매업.음식점업.숙박업 및 서비스업) 상시 근로자 5인 미만

(지원제외대상)

☞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(별첨2)

☞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사업자

☞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사업자

☞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자 및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오피스텔 등인 경우)

☞ 대기업 및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)

☞ **(중복지원방지) 아래 지원사업 수혜자**

※ 2020~2021년 해당 사업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

※ 2022년 충청남도 및 진흥원 유사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

(2022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, 2022년 충청남도 애로사항 현장지원, 2022년 가업승계(충남행복가게) 지원)

2. 지원내용

(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)

-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CS, 세무,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교육 실시(5H)
- 선정된 소상공인은 반드시 역량강화교육을 수료하여야하며, 수료 이후 경영환경개선비용 지원받을 수 있음

(경영환경개선 지원)

- 역량강화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, 점포 환경개선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
※ 최대500만원, 부가세 및 한도초과비용 본인부담

구분	세부활용분야
옥외광고물 교체	간판, LED간판, 철제간판 등 * 옥외광고등록증 첨부시 가능
내·외부 인테리어	(내부) 도배, 도색, 바닥공사, 전기조명공사, 닥트공사, 제품 진열대 제작 등
	(외부) 어닝, 셔터 등
시설집기류 교체	입식 테이블 및 의자, 영업용 냉장고 등에 한함 ※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은 영업용에 한해서만 구매인정
안전시스템분야	CCTV 설치, POS시스템, 신분증 감별기 신규 구매 및 설치, 소방 위험물(가스, 전기 등) 점검 및 교체
소독·청소용역	코로나19관련 방역 소독 및 청소 등
소방 위험물 점검 및 교체	가스, 전기 등 점검 및 관련시설 교체

※ (구매제외 항목) 개인 자산성 물품(PC, TV, 노트북, 에어컨 등), 렌탈비용 지원불가

3. 신청 · 접수

(신청기간) 공고일로부터 ~ 3. 24.(목) 18:00까지 ※이후 접수 불가

(제출서류)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sbiz.cepa.or.kr>)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구분	제출자료 목록
필수	1.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급처: 국세청 홈페이지)
	2. 매출액 증명서류(아래서류 中 1) * 매출액 확인 불가시 지원제외 ①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 ② 면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※ 발급처 : 세무서, 국세청 홈페이지(홈택스) - '21년도 매출액 신고내역서 대체 가능(원칙) - '21년도 서류 발급이 불가 할 경우 '20년 서류 대체 가능
	3. 상시근로자(종업원) 확인서류(①, ② 중 中 1)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(발급처 :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.4insure.or.kr)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www.nhis.or.kr)
	4.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발급처: 시·군청, 주민센터, 정부24) * 체납일 경우 지원 제외
	5. 지원신청서[서식 1]
	6. 소상공인 신청업체 기술서[서식 2]
	7.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[서식 3]
	8. 견적서(사양, 규격, 수량, 가격 등이 명시되어야함), 비교견적서,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
옥외광고물 제작시	9. 옥외광고등록증(간판,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) 10. 옥외광고물 표시신고(허가) 비대상확인서(신고/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)[서식4]
가산점 확인서류	1.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: 코로나 피해 매출감소증명서류 (2020년 대비 2021년 동분기 매출액 20% 감소) - 2020,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VAN사 매출증빙, POS매출액 등 2.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 3. 봉사증(2020년~2022년)

(접수방법) 온라인, 이메일, 우편 및 방문접수

- ※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(041-424-4000),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(신청 서류 누락 등)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
- 온라인 접수: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(www.cnsp.or.kr)
 - ※ 회원가입 후 [2022년 1차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]선택
- 이메일 접수: sbizcenter@naver.com
 - ※ 파일명: [당진시 경영환경개선지원 1차 신청] 업체명_대표자명
예시) [당진시 경영환경개선지원 1차 신청] 경제진흥원_홍길동
 - ※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
- 우편 및 방문 접수
 - (31450)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401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

4. 추진일정



※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(평가방법)

- (1단계) 정량평가(진흥원)
 - 평가방법: 업체제출 서류 확인
 - 평가내용: 소상공인 적격여부, 매출 및 업력, 가점 사항 등

<가점사항>

- ☞ 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
- ☞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(2020년 대비 2021년 동분기 매출액 20%↑ 감소)
 - 2020,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VAN사 매출증빙, POS매출액 등
- ☞ 최근 3년(2020년~2022년)간 봉사 이력 있는 소상공인
- * 모든 가점사항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

- (2단계) 정성평가(평가위원회) ※ 외부 전문가로 구성
 - 평가방법: 대면심사 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 있음
 - 평가내용: 계획 적정성 및 지원 필요성 등

(선정기준)

- (1단계) 정량평가: 모집규모의 2배수(100업체 내외)
- (2단계) 정성평가: 50업체 선정
 - ※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, 결원(포기 등) 발생시 차순위 지원
 - ※ 선정전후 필요시 현장점검이 진행될 수 있으며, 허위작성부분 등 인정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 - ※ 동점자 처리기준: 정량평가, 업력, 매출 고득점 순

(선정취소)
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(제작)한 경우
- 사전변경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지정된 과제 수행기간동안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- 용역사에 제작비 청구 등 부당거래 적발시 지원금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과제 부실 등 충남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(변경 및 포기)

-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및 수행업체 변경 발생 시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제출[서식9]
- 제작비용이 하향된 경우 지원금은 하향된 비용으로 감액 변경되거나 상향된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
- 지원 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 제출[서식10]

(수행업체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방식)

- 수행과제와 연관된 ‘업체’ 와 ‘종목’ 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 업체 선정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
 - 옥외광고등록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
 - 신고/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: 옥외광고물 표시신고(허가) 비대상확인서[서식4]
- 지원비 지급은 완료보고서 검토 완료 후 수행업체로 직접 지급
-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불가

(기타 유의사항)
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세부운영 관리기준 및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- 사후관리: 집기류 구매 등의 경우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예정
 - (미보유의 경우) 원상복귀 조치 및 최대 3년간 진흥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

(문의처)

- 충청남도 보부상콜센터 : ☎ 041-424-4000
-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: <http://sbiz.cepa.or.kr>

【별첨 1】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	
2. 음료 제조업	C11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	
19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	
19. 광업	B		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9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30. 운수 및 창고업	H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	
32. 도매 및 소매업	G	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	
35. 부동산업	L	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
41. 교육 서비스업	P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
<비고>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별첨
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1	주류 도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221 중	주류 소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5102	여관업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 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
68	부동산업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
64992	지주회사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²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